

제303회 임시회
2011. 9. 30.(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김재종 의원의외 6인

(김재종, 김도경, 노광기, 박문희, 정 현, 김동환, 이광희)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 2011년 9월 23일
- 회부일자 : 2011년 9월 26일

3.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개정(2011. 7. 14.)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정비하여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 감사기간 연장(안 제2조제2항)
 - 10일 이내 ⇒ 14일 이내로 개정함.
- 과태료 부과기준 확대(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2)
 -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내 서류 미제출, 불출석, 증언 또는 선서거부
- 「지방자치법」에서 사용한 용어로 정비
 - 이유 → 사유(안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별표2)

5. 검토의견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2011. 7. 14.)에 따라,
- 행정사무감사기간을 10일에서 14일로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서류 미제출 및 선서거부”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0일”을 “14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이유”를 “사유”로 “이유서”를 “사유서”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제출·불출석·증언 또는 선서거부 사실 통보 등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 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서류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
 3.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 또는 선서 등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태료 부과기준(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과 태 료	비 고
1.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또는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3회 이상	500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2회	200	
○ 불출석 또는 서류 미제출 1회	100	
2.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선서·진술을 거부한 경우		
○ 증언·선서·진술거부	5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생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의 <u>기간중 10일</u>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특별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 라 한다)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한다.</p> <p>③~⑤(생략)</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②(생략)</p> <p>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u>정당한 이유</u>가 있는 경우에는 그 <u>이유서</u>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u>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u>에 의하여 <u>정당한 이유없이</u> 감사 또는 조사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 2와 같다.</u></p>	<p>제2조(감사) ①(현행과 같음)</p> <p>② ----- ----- <u>기간 중 14일</u> ----- ----- ----- ----- -</p> <p>③~⑤(현행과 같음)</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②(현행과 같음)</p> <p>③ ----- ----- -- <u>사유가</u> -----<u>사유서</u>를-- ----- -----</p> <p>제1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u>법 제41조제5항 및 영 제43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u> <u>정당한 사유 없이</u>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u>정당한 사유 없이</u>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u>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u>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u>별표 2와 같다.</u></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 통보 등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과태료는 의장의 서류 미제출·불출석·증언 또는 선서거부 사실 통보 등에 따라 도지사가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류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2.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요구한 서류를 미제출 하였음을 입증할 자료 3.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거나 증언 또는 선서 등을 거부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 ⑦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